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34

발의연월일: 2025. 5. 16.

발 의 자:유영하·인요한・박준태

이헌승 · 윤한홍 · 이달희

김재섭 · 김선교 · 조지연

박성훈 · 정연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법위반이 명백하고,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. 또한,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 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)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"를 "행위가"로, "대하여"를 "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,"로, "일부를"을 "일부의 일시 중지 등"으로, "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"을 "따른 조치(이하"임시중지"라 한다)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,"를 "해당 행위로 인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"를 "임시중지를 하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"를 "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모두"로, "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일시 중지"를 "임시중지"로 한다.

1.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임시중지명령) ① 공정	제32조의2(임시중지명령) ①
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	
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	
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	행위가
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	
또는 통신판매업자에 <u>대하여</u> 전	대하여 해
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	<u>당 행위의 중지,</u>
또는 <u>일부를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일부의 일시 중지 등</u>
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	<u>따른 조치(이하 "임시중</u>
명할 수 있다.	<u>지"라 한다)를</u>
1.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	1.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
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	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
것이 명백한 경우	되는 경우
2.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	2. <u>해당 행위로 인하여</u>
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	
해가 발생하였고, 다수의 소비	
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	
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	
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	
되는 경우	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	② 임시중지를
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	하기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 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, 통신 판매중개자,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③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· 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 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략)

③
통신판매업자의 행위
<u>가 제1항 각 호에 모두</u>
<u>중지</u>
,
④ ~ ⑥ (현행과 같음)